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

영동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하오니, 차량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,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(폐차) 됨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1일

영 동 군



1. 공고기간 : 2024. 07. 31. ~ 08. 30.(30일간)
2. 강제처리 시기 : **공고기간 만료 이후(2024년 9월 1일 이후)**
3. 강제처리 대상 : 불입 참조
4. 차량보관 장소 : 가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(☎ 043-745-6767)
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-69
5. 강제처리(폐차)대상차량 : 54너1136
6. 공고내용
 - 가. 차량 소유자(점유자)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(자진회수 또는 폐차)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 됩니다.
 - 나.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(100만원 이하)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됩니다.
 - 다.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필요한 대체압류 등 조치 바라며,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(폐차) 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라. 자동차에 적재된 물품(비품)은 폐차와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른 강제처리예고통지, 권리행사 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.
8.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(☎043-740-3512)로 문의 바랍니다.